

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등록기준지			
전화		H.P	
학생성명	학년 반 성명:		
자격확인	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	예, 아니요	
	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.	예, 아니요	
	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.	예, 아니요	
경 력	사회경력,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 (경력사항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)	직업	
입후보 소견			
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4기 신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.			
2024년 3월 일			
입후보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
신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			

※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106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하며, 결격사유 조회 회신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